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915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

### 재판경과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9150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13 선고 2011나2115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4 선고 2009가합50259 판결

### 전문

원고, 피상고인주식회사 A

피고, 상고인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판결 선고 2014. 9. 4.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13. 선고 2011나21152 판결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N

### 이유

1.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가. 은행은 환 헤지 목적을 가진 기업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해당 기업의 예상 외화유입액, 자산 및 매출 규모를 포함한 재산상태, 환 헤지의 필요 여부, 거래 목적, 거래 경험, 당해 계약에 대한 지식 또는 이해 정도, 다른 환 헤지 계약 체결 여부 등의 경영상황을 미리 파악한 다음, 그에 비추어 해당 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통화옵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은행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통화옵션계약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이를 체결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한 권유행위는 이른바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는 위법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536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은행은 기업에게 통화옵션계약을 권유하기 전에 계약이 해당 기업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업의 거래 목적, 재산상태 등의 경영상황을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비록 은행이 이러한 조사의무를 소홀히 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통화옵션계약이 기업의 경영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은행이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은,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에서 피고가 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의 계약금액은 월 60만 달러(연간 720만 달러)인데 원고의 수출실적이 위 계약금액의 범위를 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은 오버헤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고가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체결 무렵에 원고의 예상 외화유입액, 자산 및 매출 규모를 포함한 재산상태, 환 헤지의 필요 여부, 거래목적, 거래 경험, 당해 계약에 대한 지식 또는 이해의 정도, 다른 환 헤지 계약 체결 여부 등 경영상황에 대한 조사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피고가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는 주로 공압부품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매출액은 2006년 94억 원, 2007년 120억 원, 수출실적은 2006년 675만 달러(월평균 약 56만 달러), 2007년도 913만 달러(월평균 약 76만 달러)에 이르러 달러화 환율하락에 대비한 환 헤지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사실, ② 이에 원고는 2007. 12. 10. 피고와 A/B파트 구조의 통화옵션계약(계약기간: 2년, 계약금액: 원고 풋옵션 30만 달러/피고 콜옵션 60만

달러, 이하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③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2007. 4. 5.자 신용분석자료(을 제39호증)와 2007년 1기 내지 3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자료 및 원고 담당자의 설명을 근거로 여신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금액을 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먼저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이거나 부정확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제출의 자료 및 원고 담당자의 설명을 근거로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금액을 정한 것을 가지고 적합성 원칙에서의 고객조사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외화유입현황, 수출규모, 환 헤지 필요성,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과도한 위험을 수반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가 통화옵션거래에서의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적합성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상고이유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정당하다.

## 2.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가.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구조와 주요 내용, 원고가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발생 가능한 손실의 구체적 내용, 나아가 손실 발생의 위험 요소에 관하여 고객인 원고가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의 직원인 C이 2007. 11. 9.경부터 원고를 방문하여 환 헤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통화옵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에 이른 사실, ② C은 2007. 12. 3. 및 2007. 12. 7.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거래제안서를 보냈는바, 위 거래제안서에는 통화옵션계약의 내용이 되는 계약금액, 행사환율, 녹인·녹아웃 환율과 행사 조건이 기재되어 있고, 위험에 관한 내용(녹아웃이 되면 더 이상 환 헤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녹인이 되면 풋옵션 계약금액의 2배를 매도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 잠재적 손실

안내와 만기 환율별로 입을 수 있는 손실 금액을 기재한 시나리오 분석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 체결 당일에도 피고의 E팀 직원인 F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D에게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구조나 위험성을 설명한 사실, ④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은 A/B파트로 구별되어 있기는 하지만 단순선물환 계약에 녹인, 녹아웃, 레버리지 등의 조건을 부가하여 만기 행사환율을 높인 것이어서 계약의 기본구조 및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구조만 이해하면 환율이 상승할수록 비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원고의 손실 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렵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구조와 주요 내용, 원고가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는 위험이나 발생 가능한 손실의 내용 등에 관하여 원고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설명이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위험성에 관한 설명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하지 아니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금융상품거래에서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상고이유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정당하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민일영**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신**